KBA 3x3 KOREA TOUR 2025 및 2025 KOREA 3x3 시즌제 리그 미디어 홍보 과업지시서

1. 과 업 명

KBA 3x3 KOREA TOUR 2025 및 2025 KOREA 3x3 시즌제 리그 미디어 홍보 (유튜브, 인스타그램 등)

2. 목 적

- 가. '3x3kba' 및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및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뉴미디어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으로 3x3 종목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대
- 나. 온라인 플랫폼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 제작
- 다. 영상 및 SNS 콘텐츠를 통한 3x3종목 홍보 강화 및 팬들과의 소통 활성화
- 라.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운영을 통한 홍보 활동

3. 사업개요

가. 사업기간 : 계약 체결일로부터 ~ 2025. 12. 31.

구분	회차	개최지역	대회일정(안)
KOREA TOUR 2025	1차	서울특별시	2025년 4월 12일 ~ 13일
	2차	강원 인제군	2025년 5월 10일 ~ 11일
	3차	미정	2025년 6월 7일 ~ 8일
	4차	충북 제천시	2025년 9월 20일 ~ 21일
	FINAL	미정	2025년 11월 1일 ~ 2일
시즌제 리그	1차	서울 올림픽공원	2025년 6월
	2차	서울 올림픽공원	2025년 8월 ~ 9월

※ 개최 일시와 장소는 예정(안)이며, 기상 상황 및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세부과업내용

1) 미디어 홍보물 제작은 협회와 충분히 조율하여 결정할 것

구분	세부추진내용		
채널 관리	- 뉴미디어 채널 관리 (콘텐츠 업로드, 각종 썸네일 이미지 제작 등)* 협회 인스타그램: https://www.instagram.com/3x3kba?igsh=c3Z3bG14OHJkdnR4 - 콘텐츠 관련 반응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		
실무자 회의	- 콘텐츠 기획 내용 협의 - 과업 체크리스트 보고 - 월간 업무보고		
콘텐츠 제작 및 촬영	- 협회 주관 대회 콘텐츠 제작 및 촬영(홍보영상, 하이라이트 등) - 3x3 국가대표팀 소집, 훈련, 국가대표팀 국내대회 참가 등 국가대표팀 활동 시 콘텐츠 2개 이상 제작 및 업로드 - 이외 기타 콘텐츠 기획 및 촬영, 제작 - 회차 당 영상 2개 이상 제작 및 업로드 -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등 이미지 제작물 월간 1개 이상 업로드 - 협회 유튜브(www.youtube.com/@kobatv1925)에 업로드		
현장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공유	- 사업 관련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은 협회가 지정한 웹하드에 3 일 이내 업로드		
기사·보도자료 제작	- 협회 주관 대회 진행 시 대회 당 기사 3회 이상 작성 - 국가대표팀 및 국가대표팀 참가 국제대회 관련 기사 2회 이상 작성 - 이외 협회에서 요청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및 기사 작성		
결과보고 제출	- SNS 카드뉴스, 릴스 등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운영 현황 결과보고 서 제출 - 콘텐츠별 조회수, 노출수 등 채널 사용자 반응 분석보고서 제출 - 촬영된 모든 사진 및 영상 외장하드 및 외부 드라이브를 통해 제출		

* 경기 수는 참가팀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* 사업 운영 중 콘텐츠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

4. 사업예산 : 30,000,000원 (부가세 포함)

5. 과업준수사항

- 가. 과업 수행 시,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하며 여건 변동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과업의 추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.
- 나.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자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한 다.
- 다.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, 계약업체 는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

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
- 라. 계약업체는 행사에 투입되는 진행요원 등에게 상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- 마. 계약업체는 과업과 관련된 법규에 의거 필요한 사업자 등록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바. 결과제출

- 결과보고서 1부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의거한 기타 요청 자료 일체
-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: 각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

6. 제안서 작성 안내

가. 일반사항

- 1)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,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 니한다.
- 2) 협회의 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3)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, 제출된 제안서의 누락 과 기재내용의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.
- 4)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단, 계약서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.

나. 제안서 작성지침

- 1) 제시된 과업에 따라 작성하되,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을 추가할 수 있으며, 세부내용을 담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- 2)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분량은 표지 등을 포함하여 60페이지 이내로 제한하며, 용지의 크기는 A4(210*297mm)로 제한한다.
- 3)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페이지번호를 붙이고, 페이지번호가 표시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술한다.
- 4)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야 하며, 협회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5)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 야 한다.
- 다.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* 제안서에 아래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작성항목	세부목차	
I 제안업체 현황	회사연혁 및 일반현황조직도 및 사업 참여인력 현황최근 3년 주요 유사 사업 실적	
II 제안 개요	 제안목적 및 배경 사업 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기대효과 및 비전 	
Ⅲ 사업수행방안	 연간 콘텐츠 제작 방향 제시(협회 주관 대회 및 국가대표팀 관련) SNS 채널운영 및 콘텐츠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인스타그램, 유튜브 등 3x3만의 디자인 전반 (채널아트, 썸네일 등) 기획 콘텐츠 자유 제안 	
Ⅳ 사업관리	• 사업기간 중 보고계획 • 지식재산권·저작권·보안 관련 관리방안 • 사후 관리 계획	
V 기타사항	•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및 추가 제안사항	

※ 과업 수행 지침

1. 인력 구성 및 운영

- 가. 과업수행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며, 과업수 행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수시 업무 협의가 이루어지도 록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 계획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, 교체 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후 양측 간 협의 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다.
- 다. 투입인력 및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항을 처리 및 지원하여야 한다.

2. 과업조건

- 가.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산출물, 계약목적물을 과업기간(계약기간) 내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.(계약목적물의 소유권과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·이용권은 발주기관에 양도)
- 나. 발주기관에서 산출물 및 계약목적물의 특서, 상표 등록 등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다.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상황 또는 취득·인지한 정보 및 산출물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유출할 경우 계약금의 30/100에 해당하는 비용을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한다.
- 라.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있어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 협의에 따라 해결하되,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,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.
- 마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한다.
- 바. 과업수행자가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와 과업 수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.
- 사. 과업수행자의 파산 등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과업기간 내 장비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, 폐기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.
- 아. 발주기관은 목적물의 최종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.

3. 과업의 변경

- 가. 발주기관의 상황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하되, 그럼에도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,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다. 다음과 같은 경우 양측 간 협의 후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 - 본 용역의 목적 상 과업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
 -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한 경우

4. 계약의 해지

- 가.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 위로 간주하여 7일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
 -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
 -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
 - 성실한 과업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
 -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
5.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

- 가. 과업에 의해 산출된 모든 산출물,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나,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유한다. 다만,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유포할 수 없다.
- 나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자와 양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
- 다.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납품한 계약목적물 및 기타 관련 자료 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사 전·후를 불문하 고 민·형사상 책임을 과업수행자가 감수한다.

6. 과업 보안 사항

- 가.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 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·시행하다.
 - 과업수행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
 - 과업수행 관련 정보(내용, 결과) 등에 대한 보안조치 등
- 나. 과업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7. 과업수행 성과보고

- 가. 과업 추진 중에 생산된 각종 산출물, 보고서 등은 과업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. 과업수행자는 과업 안내 수행 보고에 따라 정기 보고를 하여 과업 수행상 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다. 보고회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발주기 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과업수행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한다.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라. 본 과업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협의 또는 회의에 참석하여 야 하다.

8. 최종보고서 납품

- 가. 최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편집 순위, 수록 내용, 성격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.
- 나. 최종보고서는 기한 내 납품하되,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확정하여 야 한다. 승인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자는 재납품해야 하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9. 기타사항

- 가.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경비 일체를 부담 한다.
- 나. 본 과업수행지침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,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.